



商標法上 故意의 意義解釋

<日本最高裁判所 1981年 2月 24日 判決, 1980年(行ツ)第139號>

1. 上告人:X

2. 被上告人:Y

3. 判決主文

本件 上告를棄却한다.

上告費用은 上告人の負擔으로 한다.

4. 事件概要

本件은 藥劑 등을 指定商品으로 하는 「中央急救心」의 文字를 縱書한 登錄商標의 商標權者가 그取扱하는 心臟藥에 대해 ① 「中央」의 작은 文字를 縱書하여 그 右側에 「急救心」의 큰 文字를 左橫書한 商標, ② 「中央」의 작은 文字를 左橫書하고 그 아래에 붙여서 「急救心」의 큰 文자를 종서한 상표를 使用하였음이 藥劑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急救心」의 상표와의 關係로서 故意에 의한 類似商標의 사용등에 該當한다 하여 登錄商標의 取消理由가 되느냐의 與否가 爭點이 된 事例이다.

5. 判決要旨

商標法51條1項의 規定에 의거하여 商標登録을 取消하려면 商標權者가 指定商品에 대해 등록상표에 類似한 상표를 使用하거나 또는 지정상표에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 혹은 이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同使用結果商品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關聯된 상품과混同시킬 것을 認識하고 있었음만으로 充分하며 所論과 같이 반드시 他人의 등록상표 또는 周知商標에 類似시킨다는 意圖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까지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고 解釋함이 妥當하므로 이와 同趣旨의 原審判斷은 正當하므로 原判決의 所論에 違法이 없다.

6. 解說

이번 判決은 日本에서는 最初의 것이기는 하나 舊規定時代의 判例를 踏襲한 것이다.

그러나 取消審判에 關한 本件判決에서 爭點이 되어있는 要點은 商標權者가 指定商品에 대해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에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 혹은 이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결과 상품의品質誤認 또는 타인의 業務에 關련된 상품과 혼동시킬것을 인식하고 있었음만으로 충분하며 타인의 등록상표나 주지상표에 근사시키려는 의도로써 이를 사용하고 있었음까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상표의 侵害看做는 그 침해의 결과에 대하여 不法, 違法性을 要求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주지상표나 등록상표에 근사시키고 있었다는 不正使用者의 主觀的 意圖를 요구하지 않음은 곧 商標侵害가 行爲不法, 違法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故意與否에 대해서는 需要者保護의 立場에서品質誤認을 發生시킬 可能性을 인식하여 出所混同 및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에 注視해야 한다는 意見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나 다른 상표에 근사케 하고싶다는 商標權者的 의도는 需要者的 오인, 혼동등과는 無關하며 主觀的인 意思와 매우 좁은範圍의 主觀에 限定하는 결과가 되나 이는 상표권자의 부정행위의 意識 또는 欲望이 되며 부정행위의 惡意를 意味한다.

어쨌든 이 판결은 舊法以來의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에도 타당한 판결이라는 見解등이 支配的이다.